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지정·운영〉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62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3

I.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

다. 회 부 일 : 2024. 7.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 있는 사람 또는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함)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에게 필요한 농어업 관련 자금, 컨설팅, 기술, 경영, 창업, 교육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젊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성장을

유도할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 신설).

3. 검토의견

가.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개념]

- 후계농어업인 : 이 법 및 시행령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청년농어업인 : 이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이하 “정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정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	개정안
	1.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상담</u> 2.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u> 3.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u> 4. <u>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컨설팅</u> 5. <u>지역내 후계·청년농어업인 네트워크 지원</u> 6. <u>그 밖에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u>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착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착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 3. <u>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u>

현행	개정안
	<u>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u>⑥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 정책이 노정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장의 후계·청년농업인들은 지역사회 내 영농현장 지도 등의 역할을 해 줄 멘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농정보·기술,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제도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고 함.

따라서 후계·청년농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센터 지정 취지에 동의하며, ‘상담,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홍보, 네트워크 지원’ 등 업무 규정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규정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착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제21대국회 심사경과

제21대국회에서도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3.3.15.)」이 발의된 바 있음.

당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논의(2023.7.14.)되었는데,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었고, 이후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2024.5.29.).

4) 검토의견

지난 30년간 농가 인구와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농가 인구는 231만 4,000명, 농가 수는 103만 5,000가구로,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각각 65.3%, 41.4% 감소한 것임.

[표 1] 30년간 농가인구 및 농가 수 및 비중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농가인구 (비중)	666만 1천명 (15.6%)	403만 1천명 (8.6%)	306만 3천명 (6.2%)	231만 4천명 (4.5%)
농가 수 (비중)	176만 7천가구 (20.1%)	138만 3천가구 (9.6%)	117만 7천가구 (6.7%)	103만 5천가구 (4.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농가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 분야의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은 66.1세,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56.0%(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14.3%)인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 규모는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4%에 불과함.

[표 2] 30년간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1990년	2010년	2020년
농업경영주 평균연령	53.4세	62.3세	66.1세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비중)	32만 3,000가구 (18.2%)	54만 6,000가구 (46.4%)	57만 9,000가구 (56.0%)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비중)	25만 8,000가구 (14.6%)	3만 3,000가구 (2.8%)	1만 2,000가구 (1.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40세 미만의 청년농의 경우 2010년 전체 농가 대비 2.8%에 해당했으나 2020년 1.2%에 그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나이가 50세 미만이면서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인 후계농의 경우에도 2010년 전체 농가 대비 4.7%였으나 2020년 3.2%에 그치는 등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표 3] 후계농 및 청년농 규모 추이

(단위: 가구, %)

구분	2010		2015		2020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청년농 (40세 미만)	33,143	2.8	14,366	1.3	12,426	1.2
50세 미만	173,622	14.7	98,391	9.0	74,400	7.2
후계농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54,977	4.7	35,212	3.2	33,470	3.2
전체가구	1,177,318	100.0	1,088,518	100.0	1,035,193	100.0

※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2010, 2015, 2020)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막고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인력 유입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매월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농지 구입과 시설 설치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 등이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농촌진흥청 등 농촌진흥기관(‘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미리 살아가기 프로젝트’ 등) 수준에서도 청년농업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 내역 및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23	'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안정적인 영농 초기 정착을 위해 정착 지원금 등을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	55,106	95,724
후 계 농 업 경 영 인 육성자금(이차보전)	농지 구입·시설 설치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51,363	68,870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용자)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하여 청년농 등에게 농지 매도·임대 지원	857,726	1,241,260
청년농촌보급자리단지	귀농·귀촌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4,800	15,200
청년귀농 장기교육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중심의 장기체류형 귀농교육 지원	1,547	1,547
스마트팜 청년보육센터	스마트팜 취·창업을 원하는 청년(만18~39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위주의 장기(20개월) 보육프로그램 운영	8,000	8,000
임대형 스마트팜	지자체 등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	64,500	37,0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2024.8.19.)

이러한 지원은 주로 진입초기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지원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등 단기적 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¹⁾.

또한 청년의 농촌 탐색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정착·적응까지 일련의 연쇄적 과정을 따라가면서 접근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존재함²⁾.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정착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된다면, 준비기, 창농 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 등 청년농의 육성 단계별로 관련 사업간의 연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장의 다양한 선호와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중앙정부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정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교육·홍보, 경영컨설팅과 네트워크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를 통해 후계·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 밖에도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장이 정착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업무 미수행 또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 취소·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착지원

1) 전북연구원, 「청년창업농 영농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연구」, 2021, p106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 p34

센터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를 2025년 11억원, 2029년 55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5억원(연평균 33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이는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매년 농업인 및 어업인 정착지원센터를 각 1개소씩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농업인 정착지원센터는 개소당 매년 5억원을, 어업인 정착지원센터는 6억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한 수치임³⁾.

[표 5]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지원경비 추계

(단위: 개소, 백만원/개소,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후계·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센터	누적 지정 수(A)	1	2	3	4	5	—
	지원단가(B)	500	500	500	500	500	—
	소계(C=A×B)	500	1,000	1,500	2,000	2,500	7,500
후계·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센터	누적 지정 수(D)	1	2	3	4	5	—
	지원단가(E)	600	600	600	600	600	—
	소계(F=D×E)	600	1,200	1,800	2,400	3,000	9,000
합계(G=C+F)		1,100	2,200	3,300	4,400	5,500	16,500
	국비(50%)	550	1,100	1,650	2,200	2,750	8,250
	지방비(50%)	550	1,100	1,650	2,200	2,750	8,250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연도별 정착지원센터 지정 수>

- 농업인센터(누적): ('25) 1개소 → ('26) 2 → ('27) 3 → ('28) 4 → ('29) 5

- 어업인센터(누적): ('25) 1개소 → ('26) 2 → ('27) 3 → ('28) 4 → ('29) 5

(정착지원센터 1개소당 지원금액)

- 농업인 정착지원센터: 매년 5억원/개소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인교류센터 지원예산(매년 5억원) 준용

- 어업인 정착지원센터: 매년 6억원/개소

※ [참고자료] 후계·청년 농업인 및 어업인 지원사업 및 지원예산 현황 참고

한편,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제6호는 정착지원센터의 업무를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착지원센터의 취지(“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보다는 “지원”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정착지원센터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정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 및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이 요구됨.

유사조직레인 「귀농어귀촌법」의 ‘귀농인, 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하는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지자체장이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센터에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할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셋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는

데, 정착지원센터가 국가와 지자체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유사입법례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넷째, 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장에게 감독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보고 및 검사 규정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입법례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2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섯째, 개정안 제13조의2제3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정착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사업비 외에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도 있어 보임.

<유사입법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정착지원센터의 업무가 공공성이 높은 측면이 있고, 업무범위에 정부 정책·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별칙적용에서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표 5]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유사센터와 개정안의 후계농정착지원센터 비교

구분	귀농귀촌 지원센터	도시농업 지원센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센터	(개정안) 후계농정착 지원센터
목적	귀농귀촌 희망자의 체계적 준비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실시	도시 등 유휴인력과 단기 인력 필요 농가간 인력 중개	후계·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
지원 대상	귀농귀촌 희망자	도시농업인	농업분야 구직자, 구인농가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 업무	귀농귀촌 정보 제 공, 상담, 교육, 홍 보 등	도시농업 교육·홍 보, 체험·실습 프로 그램, 도시농업 기 술 교육·보급, 텃밭 용기·종자·농자재 보급·지원 등	관내 인력풀 모집· 구성, 구인농가-근 로인력간 중개, 작 업장 이동 및 외국 인 계절근로자 고 용 지원 등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영 농·영어 정착을 위한 상 담,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경영컨설팅, 지역 내 후계·청년농어업인 네트워크 지원 등
지원 예산	국비(센터 운영비 등) 미지원 ※ 사업비 지원: 귀농 귀촌유치지원사업 7,587백만원(102 개소, '23)	국비(센터 운영비 등) 미지원 ※ 사업비 지원: 도시 농업교육인력양성 지원사업(지원센 터, 전문인력양성) 255백만원('23)	국비(50%~70%) 지 원(농촌고용인력지 원-농촌인력중개센 터사업 7,702백만원 (190개소, '23))	개소당 5억원(예정처 추계)
개소 수	시·군 귀농귀촌지원 센터 102개소('23년)	55개소('23년)	190개소('23년)	미정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2024.8.19.)

문 의 처

02)6788-5414